유럽에서의 신향정신성 물질 법과 집행, 도전과제와 해결방안

※출처 : EMCDDA
※ 편집 · 감수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김영기 정책홍보팀장

유럽의 신향정신성 물질에 대한 법률적 대응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유럽연합조기경보시스템(EU's Early Warning System)에 보고된 신향정신성물질(NPS, New Psychoactive Substances)들은 약 300개에 이른다. 이러한 유럽 신향정신성물질 시장의 확대와 변화는 EU 각국 정부들에게 기존 대응체계인 '마약법(drug control law)'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서 EU 사법재판소(CJEU)의 판결내용과 EU 회원국들의 다양한 법률적 대응책들을 소개한다.

2013년부터 2015년 기간 중 유럽연합조기경보시스템(EU's Early Warning System)에 보고된 신향정신성물질(NPS, New Psychoactive Substances)들이 약 300개에 이르는 등 유럽 신향정신성물질 시장의 변화는 EU 각국 정부들에게 기존 대응체계인 '마약법(drug control law)'의 상응되는 변화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법률적 대응책들이 소개됐다. 즉 소비자 보호나 국민보건 또는 의약품 등과 관련된 기존의 법규를 활용한다거나 향정신성물질을 그룹별로 구분 관리하여 통제가 가능하도록 마약관련법을 개정하거나 나아가 혁신적 신규 법률을 제정하는 등의 다양한 대책들이 등장했다.

인간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물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나아가 유럽연합의 요구사항에 근거를 두고 2014년에 제정된 의약품법이 도전을 받아 EU 사법재판소(CJEU)에 섰다. 그 결과 유럽사법협력기구(Eurojust,The European Union's Judicial Cooperation Unit), 마약과 마약중독에 관한 유럽감시기구(EMCDDA, The European Center for Drugs and Drug Addiction))는 통제가 안되는 향정신성물질에 대한 법적 문제제기에 따른 사법적 공조를 통한 새로운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요구 받았다.

본 합동보고서의 제1편은 정책입안자들을 염두에 두고 작성됐다. 신향정신성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4가지 도전과제를 제시했으며 많은 EU 회원국들이 사용할 상이한 법률적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기술했다. 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적 신규법률 제정에 초점을 두고 작성된 보고서는 주요 현안에 대한 기존의 사고를 완전히 바꾸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기존의 신향정신성물질을 정의하는 기준, 등록체계, 법규위반에 대한 처벌조항 등이 이에 해당된다.

신향정신성물질 시장의 마약법 변화 촉구

최근 몇 년 동안 유럽 신향정신성물질 시장의 변화는 EU 각국 정부들에게 기존 대응체계인 '마약법(drug control law)'의 상응되는 변화를 촉구했다. 국제적으로도 UN 협약은 국민건강을 우선(보호)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서 평가 확인된 위험성에 기초를 두고 마약을 관리하고 있다. UN 협약에 서명한 나라들은 규제물질의 무분별한 거래를 처벌하고 이를 단절시키기 위한 처벌조항의 제정을 요구받았다. 일반적으로 형법을 적용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처벌에 연관된 물질들을 개별적으로 목록화 하는 등 명확히 규정하고, 어떤 경우에는 화학적 구조에 따라 그룹별로 구분해서 정의했다. 이러한 기본을 토대로 신향정신성물질(NPS)로 확정되면, 건강에 끼치는 위험성을 평가한 뒤 형벌 적용이 가능한 신향정신성물질 목록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들은 2015년에 EMCDDA에 의하여 모니터링 된 - 즉 UN국제마약관리협약에 의거 관리하는 물질의 2배 이상이 되는- 약 560개의 NPS 수량에 맞추어 대책이 수립되고 있다.(EMCDDA and Europol, 2016)

회원국들은 마약관리체계를 변화시키고자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했는데 다수의 회원국들이 신속하게 NPS를 통제관리하기 위하여 의약품을 정의하고 있는 의약품규정의 적용에서 출발했었다. 그러나 2014년 10월, NPS 법적기소를 다룬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NPS가 의약품의 범위로부터 제외되어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고 확정 판결했다(CJEU, 2014). 결과적으로 의약품법에 기초해서 접근했던 NPS문제는 더욱 혼란스러워지게 되었다. 이는 향정신성물질의 공급이 의약품법에 위반되는 경우 2중 처벌 문제의 대두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오던(전통적) 방식의 관련 국가들 간 법적 협력이 매우 어려워진 것이다. 이러한 근거에 반하여, 2014년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헤이그에서 개최된 마약밀매에 관한 Eurojust의 대책회의는 아래의 사항에 중점을 두는 대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1)즉 NPS 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써 소비자보호법, 식품안전법 등 행정법(administrative laws)을 발동(소매점 판매 취소등)하여 법적으로 대두된 문제를 검토한다.

2)Eurojust와 EMCDDA의 (합동) 보고서는 EU 국가 간에 NPS와 관련된 법적 협력 문제와 EU 전역에서 채택된 다양한 NPS 관리대책 등 NPS의 통제를 위한 공동분석내용을 제시한다.

이번에는 보고서 제1편의 EU 전역에서 채택된 상이한 NPS 관리대책들을 전반적 개요와 동시에 해당분야의 법률 및 정책 담당자들이 관심을 끌만한 사항들을 소개한다.

유럽에서의 신향정신성물질(NPS)에 대한 대책

10년 전까지 향정신성물질(psychoactive substances)은 불법마약시장에서 떠오르는 흐름이었지만 UN협약에 포함된 규제물질은 아니었다. 따라서 매년 일정량의 물질들이 제한적으로 등장하였으며 일반적으로는 암페타민이나 헤로인, MDMA(환각제의 화학명)와 같이 규제되고 있는 마약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기업가들은 공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경우라면 무엇이라도 공개판매가 가능하다고 추론하면서 규제목적으로 등재되지 않는 물질을 공개 판매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매년 일정량의 신물질들이 등장했다.

그러나 발달된 통신기술과 세계화의 결합은 국가 간에 급격한 속도로 (향정신성)물질들을 양산시키고 시장화 하였으며 인터넷은 물론 도시와 마을의 전문상점 등에서 공공연하게 이러한 물질들이 판매됐다. 이로 인해 4가지 특단의 대책 안이 대두되게 됐다.

1 일부 물질들은 (적어도 초기에는) 매우 새로우며 국민건강에 위험성이 있다는 일부 증거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러한 위험성의 증거사례는 제제를 통한 통제가 정당한 조치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2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은 시간이 소요되며

유럽에서는 NPS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NPS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부국가들은 형법개정을 위해 국회로부터 승인받는데 1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한다. 그러나 신규마약이 탄생하는 속도란 정부당국에 의해 신향정신성물질로 승인받고 (이를 대신할 대체물질을 선정하고) 매장에 나오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3 기업가들은 광범위한 범위를 축소시켜 의약품법에 등재된 범위 내의 제품 목록만을 사용하여 왔는데 이 광범위함의 정의는 많은 물질들의 정의가 애매모호하여 검찰(presecutor)이 해당제품의 유통이 범죄행위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4 물질들이 제품목록에 등재된다는 의미는 법이 집행하는 시험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의미이나 새로운 시험에 따른 기술적 재정적 자원이 반드시 상승하여 뒷받침되는 것은 아니다.

유럽 각국은 NPS 관련 문제들에 대한 각기 국가별 차별되는 대책안들을 내놓았다. 이러한 NPS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안들은 일부 중복되며, 광범위하기도 하지만 크게 3개의 그룹별로 식별된다.

첫 번째 그룹은 소비자, 건강보호, 의약품 등을 다루는 기존법규를 활용했다. 두 번째 그룹은 마약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여 기존 관리되고 있는 물질들을 그룹별로 다시 구분 정의했다. 세 번째 그룹은 새로운 법률을 제정했으며 일부국가에서는 향정신성물질의 정의를 화학적 구조가 아닌 사용효과에 맞추어 적용시켰다.

소비자 안전과 의약품법

여러 유럽 국가들이 성공적으로 소비자(안전) 보호법을 적용하게 됐는데 이는 EU가 정의하는 내용과도 부합되며 또한 모든 회원 국가들이 이미 적용해야만 하는 사안이다. 실제로는 국가별로 상이한 소비자보호법을 적용했다. 폴란드의 경우 2010년, 향정신성제품 자체에 목표를 두고 전문판매대리점들을 대규모 폐업시켰으며 이는 개별물질의 성분에 목표를 두는 경우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서는 식품과 일반제품(공산품)의 경우 사용 용도를 자세히 표기하도록 되어있는 법률조항에 합성대마 성분 포함제품이 이탈리아어로 표기가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제품 모두를 몰수하는 내용을 포함 시킬 것을 요구받아왔다. 비슷한 접근방식이 영연방에서도 적용됐다. 목욕용 염제(bath salts)와 비료(plant food)에 사용된 메페드론 제품의 판매를 중지시켰다. 소비자보호법(consumer safety laws)을 첫 번째로 적용한 폴란드는 자연스럽게 대체마약(substitute drug)의 법률적 정의를 '마약 대신 사용하거나 동일목적에 사용하는 물질'로 변경했다(마약으로 분류되어 사용금지가 되면 대체품을 사용) 그리고 건강보호법을 개정하여 대체마약이 건강을 위협한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이 건강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의 정의에 대한 EU의 중립적 입장으로 인해 반드시 인체건강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의무적 조건이 빠지게 되자 EU 회원국들

의 NPS에 대한 법률적 대책마련에 유연성이 생겼다. 정부의 의약품 담당부처가 NPS를 의약품으로 분류할 때는 수입, 유통, 매매에 대한 허가를 적법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의약품법을 적용하여 2007년 이래 최소 7개 국가가 국가적 차원에서 1개 이상의 신규마약의 공급을 의약품법으로 관리했다. 그러나 2014년 7월에 EU사법재판소는 이러한 방식은 EU의 중립적 정의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중지시켰다.

마약법의 개정

신물질등장의 위협에 따른 여타 회원국들의 대처방식으로는 기존의 마약관련법률을 개정하거나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이었다. 일부 국가들은 법적절차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임시 관리대책을 내놓았는데 이는 철저한 관리에 필요한 조사기간의 필요성 문제도 대두되었기 때문이었다. 일례로 2013년에 라트비아와 슬로베키아에서는 임시적 통제관리에 관한 내용을 법률적으로 제정하고 보건부(한국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센터가 각기 담당하여 시행하도록 했다. 2011년에는 영연방이 임시적으로 마약류를 구분하는 법규도 제정하였는데 해당되는 물질들은 최고 1년까지 마약법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2012년도에 헝가리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제정 시행됐다. 마약의 분류등급(drug schedules)에 속한 물질들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시킬 수 있음을 근거로 위험성 평가규정을 개정하고 치료목적이 아닌 경우 마약을 통제물질에 추가했다. 체코공화국은 마약의 관리를 의회입법으로 통제하여 왔으나 2014년도에 정부법령(시행령)으로 변경하면서 이후 추가되는 신규물질의 등재기간을 단축시켰다. 2014년 말에 핀란드는 마약법을 개정해서 소비시장에서 판매 금지된 향정신성물질도 관리할 수 있도록 그 관리범위를 확대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여 취급할 시에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최고 1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여러 국가들이 기존의 마약법을 활용한 적용범위를 확대시키는 방식을 채택했다. 즉 종전에 적용해오던 개별물질 대상의 접근방식을 달리하여 그룹별로 세밀하게 구분한 후 기존의 마약법을 적용시켰다. 독일은 그룹별 분류채택 방식을 적용하는 과정에 있으며 벨기에는 2014년에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했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2012년에 EU의 요구를 거부했는데 그 이유로 일부 물질이 복잡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 다른 물질들의 사용이 제한되서는 안된다며 거부했다.

새로운(혁신적) 법률대책

세 번째 그룹 국가들은 이러한 물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격적으로 신규법률을 제정했다. 제정된 신규법률들은 3가지의 주요 양상을 지닌 것으로 확인됐다.

■ 신규물질로 정의하기 위한 기준 또는 사용 동기 ■ 신규물질을 통제관리하기 까지 필요한 시간의 단축절차 과정 ■ 마련한 처벌의 수준

이들 국가별 대책내용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NPS 를 정의하는데 사용된 용어 ■ 위해성기준의 포함여부 ■ NPS를 통제관리하고 평가하기 위해 적용한 절차 ■ 통제(관리)대책이 임시적인지 영구적인지 여부 ■ 시행책임 기관 ■ 적용가능 벌칙

향정신성(정신에 작용)의 기준, 동기와 유해성

다음의 3가지 요소 중 2개가 충족되면 통제(관리)물질로 정의된다. 1) 물질이 향정신성(정신에 작용)을 지녀야 한다. 2) 남용과 독성을 야기 시키는 특성을 지녀야 한다. 3) 일부 위해성과 건강을 위협하는 성질을 지녀야 한다. 아일랜드와 루마니아의 법률은 향정신성의 정의에 특정 임계치를 적용했다. 아일랜드는 향정신성을 '중요한 정신착란이나 정신적 변화가 수반되는 경우'로 정의했으며 루마니아(헝가리와 포루투갈도 해당된다)는 '통제되고 있는 마약과 유사한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 향정신성 특

"통신기술과 세계화의 결합은 국가 간에 급격한 속도로 (향정신성)물질들을 양산시키고 시장화 하였으며 인터넷은 물론 도시와 마을의 전문상점 등에서 공공연하게 이러한 물질들이 판매됐다. 이로 인해 유럽에서의 신향정신성물질(NPS)에 대한 4가지 특단의 대책 안이 대두되게 됐다"

성을 지녔다고 정의했다. 두 경우 모두 의존성을 야기시키거나 의존성 야기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며 이를 향정신성에 해당된다고 정한 것이다.

신향정신성물(NPS)의 등재

2009년도에 시행된 분석내용에 의하면 EMCDDA는 마약으로 등재 시 필요한 행정결정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했으며 의회를 통한입법(의원입법)으로 시행하는 것 보다 훨씬 신속한 부령(시행규칙)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했다. 그러나 부령은 의원입법보다 면밀한 검토가 부족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법적인 접근 방식으로 1) 헝가리, 오스트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는 장관승인사항으로 2) 핀란드는 정부령으로(내각제의 정부이므로 총리승인에 해당) 3) 영연방은 의회의 승인사항으로(해당물질을 임시마약으로 통제하는등) 4) 스웨덴, 라트비아는 주정부의 보건부처(government agencies in the health sector) 의해서 각기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됐다(참조:스웨덴의 경우 자치적으로 주정부가 정책의 주요권한을 지님)

관리감독과 신속한 대처 사이에는 균형점이 중요하다. 핀란드에서는 사안이 변경되어 보건사회부장관 보다는 정부(책임총리의 상위개념)가 권한을 행사해야 할 경우가 발생됐을 때에만 법률을 통과시키는데 이는 마치 미흡한 사안이 발생하여 신속한 결정권이 부여되어야 할 때를 의미한다.

다음의 4개 국가는 NPS로 신규 등재하지 않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기준에 부합되는 새로운 물질이 있다면 등재를 고려하게 될 것이다. 신규등재하지 않는 나라로는 아일랜드 폴란드, 루마니아, 영연방이 이들 국가에 해당된다.

〈표 3〉 새로운 향정신성 물질 공급에 관한 가장 엄격한 처벌

	징역(년)		EUR의 벌금 (징역이 없는 경우)	몰수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
	Normal	Aggravated		
아일랜드	1	5		
라트비아	2	5		
헝가리	3 or 5	5 or 8		
오스트리아	2	10		
폴란드	1(advertising)	-	250,000(manufacture or distribution)	
포르투갈	-	-	45,000	
루마니아	2 or 3	5		
슬로바키아	-	-	332.000	
핀란드	1	-		
스웨덴	-	-	-	Yes
영국(2011)	0.5	14		
영국(2016)	1	7		

NB : 이는 범죄에 적용될 수있는 유일한 법률은 아니며, 실제로 벌금은 해당 사건에서 선택한 특정 요금에 따라 다름.

위반행위의 처벌

신규법률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들은 주로 NPS의 공급행위와 관련이 있다. (제조, 수입, 판매와 유통 등) 그러나 법률의 일부항목에는 물질의 광고행위도 확실한 위법행위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러한 위반행위들의 처벌은 스웨덴에서의 단순몰수와 제품파기부터 영연방의 최대 14년 징역구형 등 처벌범위가 국가별로 다양하다. 영연방에서 중형을 적용하는 이유는 해당물질이 한시적이지만 규제마약으로써 간주되어 여타 마약공급 위반행위와 동일하게 간주되기 때문이다. 상이한 법률적 대책에 부응되어 적용되는 형벌의 내용은 표3에 나와 있다.

포르투갈과 슬로바키아에서는 범죄적 위반이 아닌 행정적 관점의 위반일 경우 단지 벌금형으로만 구형한다. 이와 같은 경우 폴란드에서는 제조와 유통과 관계된 사안만이 해당된다. 형사처벌의 배제(Non-criminal penalties)는 위해성정도가 불명확함에 비례하여 선택적용되는데 이런 접근방식은 양벌적용 문제가 대두될 경우 국가 간의 법률적 협력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오스트리아와 라트비아는 심각한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경우 장기 구금형이 가능한 반면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유통자체 보다도 광고행위를 중하게 여겨 가장 높은 형벌을 적용하기도 한다. NPS를 개인적 용도로 소지하였을 경우 단지 2개 국가만이 처벌을 적용한다. 헝가리의 경우 조제약의 경우라도 10g 이상의 NPS가 포함되면 소지했을 경우 처벌을 적용한다. 라트비아의 경우는 NPS를 개인용도로 소지했을 경우 행정처분을 적용해 경고와 벌금형으로 처분하는데 이는 1년 내에 추가적인 행위가 발생되는 경우도 감안하여 행정처분을 적용하고 있다(1년 이내에 동일내용이 추가 발생시엔 가중처분을 의미)

결론

본 요약보고서는 유럽 회원국가들이 마약범죄에 대한 국가 간의 법률적용과 마약정책, 국민보건을 위협하며 신속하게 변화하는 NPS 시장과 관련하여 어떤 대책들을 내놓는지에 관한 개요를 제공한다. 회원국들은 NPS가 등장해서 공개적으로 판매되는 속도에 맞추어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과 사전예방원칙 나아가 법률(형법)의 신뢰성 사이에 균형을 지키도록 요구받았다. 이 문제에는 반드시 공중보건에 위해성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아도 해당된다.

공급규제 대책의 일환인 의약품으로서의

NPS 분류를 통한 대처방식들은 2014년 CJEU 결정에 의하여 줄어들었다. 그러나 회원국들은 소비자 안전이나 마약통제에 목표를 둔 기존의 법률을 적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구체적으로 NPS를 다루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초국가적으로(국가들 간에) 발생된 사건에 대한 법집행은 주로 물질의 공급 측면에서 범죄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러 회원 국가들의 법률 개정추이를 살펴보고 법률 개정 이후 일부 대책들이 어떤 방식으로 채택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나아가 지속적인 상황 모니터링이 요구되는데 이는 특이한 상황을 보유한 국가의 관점을 고려하고 이러한 국가의 요구에 부응되는 효과적인 국민건강 대책을 확보할 필요성도 요구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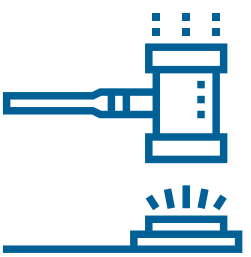

적용사례 I : 메페드론(4-methylmethcathinone)과 파생부산물(subproducts)

2013년에 이탈리아 당국은 네덜란드 회사로부터 이탈리아로 향하던 여러 소포꾸러미를 압수했으며 이탈리아 당국은 NPS의 밀매임을 밝혀냈다. 압수한 물질들 중에 1)메페드론 (가장 위험한 마약의 하나로 간주되는 향정신성물질로서 이탈리아 법의 향정신성물질 표 I로 등재된 물질이다.(예: 헤로인,코카인)

2014년 초에 이 사건은 Eurojust(유럽사법협력기구)로 보내졌는데 이는 수색 및 압류 등의 사법적 조치를 통해 사건의 증거를 모으고 증인심문요청장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초기에는 네덜란드 당국이 이러한 조치들에 동의했는데 이는 메페드론이 네덜란드법의 표1에 해당되는 점이 고려됐었다. 유력용의자에 대한 상응되는 조사가 시작됐으며 2015년 초에는 네덜란드에서 체포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이탈리아에서 압류한 물질의 기술적 분석은 네덜란드 회사로부터 보내진 물질이 메페드론이 아니고 파생되는 부산물로서 네덜란드 법률적 적용 근거에서 벗어나 사법적 조치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2014년 7월 CJEU의 판결 뒤로는 의약품에 관한 법률(의약품법)이 더 이상 NPS의 생산과 밀매를 단속하는 사법적조치로 적용하기가 어려웠다고 네덜란드의 검찰당국은 설명했다. 검찰당국은 이러한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다른 법규도 검토했으나 실행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탈리아로 부터의 사법조치 요청도 쌍방가벌성 문제로 집행할 수 없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시작했던 병렬수사(parallel investigation)도 중단해야 했다. 이 사건은 CJEU의 판결이 EU에서 NPS에 관한 국경을 넘는 협력(국가협력)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음과 물질의 기술적 분석의 어려움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1) 다른 압수물질로는 methylone, 4FA, 4-MEC, pentedrone, 6APB, MDPV, alpha-PVT, 3-MMC, MMC, isopentedrone, methyltryptamine. 등이 있다.

적용사례 : 3,4-메틸렌디옥시피로발레론(Methylenedioxypyrovalerone (MDPV)과 -Pyrrolidinovalerophenone (알파-PVP) I

※ MDPV:중추신경흥분제로 미국,유럽에서는 입욕제, 비료등에 사용

※ alpha-PVP : 합성케치논 계열의 필로폰과 유사효과, 흥분과 환각효과 지님

2014년에 NPS 밀매가 적발되어(즉, MDPV와 alpha-PVP가 중국에서 스페인을 거쳐 핀란드로 가는 도중) 핀란드와 스페인 당국의 조사가 진행됐다. 의심되는 물질은 양국에 등재된 물질이었으나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했다.(각기 핀란드는 마약, 스페인에서는 위해성 물질) MDPV와 alpha-PVP는 핀란드에서는 마약범죄 위반이나 스페인에서는 마약이 아니고 관련 조항이 스페인 형법 제359조에 해당되었다. 문제는 스페인에서 분석된 1kg의 alpha-PVP에 있었는데 피로발레론(pyrovalerone)으로 확인되었다. 피로발레론은 양국가 모두 마약성 물질로 간주하고 있는 물질이었다. 하지만 핀란드에서 재분석을 실시하자 alpha-PVP로 확인되었다.

2014년에 이 사건은 Eurojust로 의뢰됐고 첫 협력회의가 2014년 7월에 개최댔다. 하루전에 CJEU 판결이 있었고 사법적 협력방향에 상호 동의했다. 마지막 단계에 합동수사팀을 설치하기로 하면서 스페인도 병렬수사(같은내용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Eurojust와 Europol(유럽경찰)은 합동수사팀을 지원했다. CJEU 판결 이후에는 합동수사팀 구성 없이 이사건을 진행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음도 명확해졌다. 법률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또 다른 Eurojust 주최 협력회의가 개최됐으며 핀란드가 인정한 물질들이 스페인에서는 몰수되고 불법소지 문제까지 대두됨에 따라 핀란드에서는 2중 처벌문제를 논의하게 됐다. 특별히 논의된 사항은 그 물질이 스페인에서 핀란드로의 유통과정이 밀매가 아니라면 불법소지 사유로 핀란드 사법권이 수사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었다. 또한 스페인 형법 제359조를 적용하는 법원의 결정이 필요해졌는데 이는 그 물질이 스페인에서는 위해물질로 등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이 사건은 NPS 판결로 나타난 바와 같이 법률적 장애와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JIT(합동수사팀) 같은 국제적 사법협력기구와 Eurojust 협력회의의 필요성, 나아가 Eurojust 채널을 통한 자발적 정보교환 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추가적으로 이번사건은 재판전 조사기간과 소송 절차 과정에서 직접 접촉할수 있었다는 점에 그 본질이 있다. 왜냐하면 스페인에서의 법과 법률시행에 대한 정보가 급히 요구됐던 시기에 직접 조사가 가능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